

# 심 사 보 고 서

【 서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1996. 7. 18  
총 무 위 원 회

## 1. 심 사 경 과

- 가. 제출일자 : 1996. 7. 9
- 나. 제출자 : 서 산 시 장
- 다. 회부일자 : 1996. 7. 11
- 라. 상정일자 : 1996. 7. 15

##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세무과장 유계동)

가. 제안이유.

- 현행 지방세 감면조례 중 운영상 미비점등을 개선하고 농어촌주택개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등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 시행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농어촌개량사업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어촌주택의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85㎡ 이하” 에서 “전용면적 100㎡ 이하” 로 확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토록 함(안 제11조).
- 임대 주택감면조례에서 “전용면적 40㎡이하인 영구 임대주택과 복리시설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면제” 를 “전용면적 40㎡이하인 영구임대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 토록 함(안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 이상의 감면규정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것 하나만 적용토록 신설함(안 제24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 운용되고 있는 서산 시세 감면조례에 관하여

- 농어촌 주택개량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어촌주택의 감면범위를 현행 전용면적 85㎡이하에서 전용면적 100㎡이하로 확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 대하여는 ①, ②항중 부대복지시설을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을 포함하여로 조문을 개정 감면을 확대하고

- ②항의 40㎡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외에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며

- 중복감면을 배제하기위하여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 그중 감면율이 높은것 하나만을 적용하도록 중복감면의 배제규정을 신설 하는 등

- 농어촌 주택개량 및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과 중복감면의 배제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것으로 판단됨.

###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없었음

## 5. 토 론

- 없었음

## 6. 소수의견

- 없었음

## 7. 심사결과

- 원안대로 가결

제안 번호	제 90호
의결 년월일	1996. . . (제 회)

## 서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년월일	1996. 7. 9.

# 서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0
----------	----

제출년월일 : 1996. 7. .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 1. 제 안 이 유

- 현행 지방세 감면조례 중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농어촌주택개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등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 시행하려는 것임

## 2. 주 요 골 자

- 농어촌개량사업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어촌주택의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85㎡이하”에서 “전용면적 100㎡이하”로 확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토록 함(안제11조).
- 임대주택감면조례에서 “전용면적 40㎡이하인 영구임대주택과 복리시설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면제”를 “전용면적 40㎡이하인 영구임대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토록 함(안제12조제1항및제2항).
-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 이상의 감면규정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것 하나만 적용토록 신설함(안제24조).

## 서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본문중 “사업으로 인하여”를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자(당해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를 포함한다)로서”로 하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를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로 하며, 동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3.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
4. 오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제12조제1항 본문중 “그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다)”를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중 과세기준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전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복리시설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24조를 제25조로 하고,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u>사업으로 인하여 당해지역에 거주하는자(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부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하되, 동지역에서는 993제곱미터이내의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한다.</u></p> <p>1. <u>농어촌주택개량사업 및 취락구조개선사업계획에 의한 주택개량사업</u></p> <p>2. <u>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중 농어가주택 정비사업 및 오지종합개발사업</u></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제11조(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 <u>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자(당해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를 포함한다)로서</u> -----            -----            ----- <u>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u> -----            -----            -----            -----            -----</p> <p>1. <u>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u></p> <p>2. <u>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u></p> <p>3. <u>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u></p> <p>4. <u>오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u></p>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②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이하인 영구임대주택(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제1항제1호에 규정된 기간 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과 당해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그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시설에 한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중과세 기준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으로사용하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및 그 부속토지(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복리시설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p>	<p>제24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p>	<p>제24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p>	<p>제25조(시행규칙) (현행 제24조와 같음)</p>
<p>&lt;신 설&gt;</p>	<p>제24조(시행규칙) (생략)</p>	<p>제25조(시행규칙) (현행 제24조와 같음)</p>	<p>제25조(시행규칙) (현행 제24조와 같음)</p>	<p>제25조(시행규칙) (현행 제24조와 같음)</p>